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3204호
다. 제출일자: 2022. 5. 25.
라. 회부일자: 2022. 5. 27.

2. 제 안 사 유

- 기존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중에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친환경 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다. 녹색실천마일리지 적용대상 및 참여 신청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라. 마일리지 통합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대상선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관리·감독 등 절차는 조례 개정 후 세부사업 진행 시 처리 지침 및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사항
 - 관련부서 의견조회('22.3.21.~'22.4.11.) : 의견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2) 입법예고(2022. 3. 21.~4. 11.)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중에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신설하며, 이의 적용대상, 참여 신청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 있음.
- 조례 명칭 변경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친환경 마일리지로 정의하고 동시에 안 제1조(목적)와 제3조(기본 책무) 등에서 ‘에너지절약’ 문구를 ‘친환경 생활 실천’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문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2조(정의)는 제4항에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 마일리지’를 에코 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총칭으로 정의하는 것임.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더 높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 회원(1,000가구)을 모집하여 녹색실천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며, 향후 재활용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친환경 행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기준 마일리지제도의 초점이 건물 에너지, 자동차 이용량 감축 등 시민들의 정량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정성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안 제2조(정의)>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u><신 설></u></p> <p>1.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u><신 설></u></p>	<p>제2조(정의)</p> <p>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p> <p>2. -----</p> <p>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p> <p>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p>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친환경 마일리지제도의 적용대상, 참여 및 탈퇴 신청에 대한 조문 정비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향후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10조는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